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	2
주주총회 소집공고 .....	3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III. 경영참고사항 .....	6
1. 사업의 개요 .....	6
가. 업계의 현황 .....	6
나. 회사의 현황 .....	9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10
□ 재무제표의 승인 .....	11
□ 정관의 변경 .....	14
□ 이사의 선임 .....	17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18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	19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년 3월 13일

회 사 명 : (주)텔레칩스  
대 표 이 사 : 서 민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0 루터회관빌딩  
(전 화) 02-3443-6792  
(홈페이지)<http://www.telechip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배 동 호  
(전 화) 02-3443-6792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3기 정기)

- 1) 일시 : 2012년 3월 30일(금), 오전 9시
- 2)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0번지 루터회관 지하1층 베네치아 예식장
- 3) 보고 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4) 제1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3기(2011.1.1 ~ 201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현금배당 : 8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서민호)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이장규) 선임의 건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고성규)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고성규 (출석률: 100%)	김정민 (출석률: 100%)
			찬반여부	찬반여부
1	2011.02.11	-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 제2호 의안 : 현금배당 예정안 승인의 건	참석/찬성	-
2	2011.03.04	- 제1호 의안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정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참석/찬성	-
3	2011.08.11	-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건	참석/찬성	-

주1) 김정민 사외이사는 2011년 2월 28일 사임하였으며, 2011년도 2회차 이사회부터는 참석 및 찬반여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TELECHIPS HK LIMITED (계열회사)	제품판매	2011.01.01~2011.12.31	6.3	0.88%
	용역수수료	2011.01.01~2011.12.31	4.0	0.56%
	합 계		10.3	1.44%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 (가) 산업의 특성

당사가 속한 팹리스 반도체산업은 반도체 제조공장(Fab : fabrication facility)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수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제조부분을 분리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설비투자 위험을 회피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기획, 회로설계 및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여 능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최근 특정분야의 시장지배자로 성장한 일부 팹리스 반도체 회사는 Fab에 대한 통제력까지 가지게 되어 종합반도체회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종합반도체회사도 Fab의 규모를 줄이고 특정분야의 반도체제품개발에 집중하는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팹리스 반도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의 생산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자신의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팹리스 회사는 자신의 핵심역량을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함으로써 여타 반도체 업체보다 능률적인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 생산설비(Fab)를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설비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팹리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지식집약산업으로서 핵심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갖춘 미국, 유럽,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의 업체가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서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DMP), 모바일 TV 수신칩, GPS 수신칩 등의 제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분야로 이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제품의 여러 기능이 점차 통합되는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적용되는 반도체 제품 또한 MCP, SIP 등의 복합칩 형태로 다양하게 공급되거나 또는 여러 반도체들을 통합하여 모듈 및 KIT 형태로 공급하는 추세를 띄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의 경우 주요제품이 다른 여타 팹리스 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되는 제품 또한 단일칩의 형태에서 점차 복합칩 또는 KIT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산업의 현황은 특정한 제품이나 응용분야가 아닌 당사의 제품이 공급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제품이 적용되고 있는 주요한 응용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Portable CE (Tablet PC/PMP/PND 등)
- 휴대폰(Smart Phone/Feature Phone)
- 자동차용 Head Unit(Audio/Video/Infotainment 등)

한편, 당사를 비롯한 펌리스 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펌리스 산업환경에 의한 영향 보다는 주요 제품이 적용되는 응용제품이 속한 산업 환경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당사가 제품을 적용하는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의 개요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나) 성장성

- Portable CE (Tablet PC/PMP/PND)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은 물론 위치 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무장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등장은 기존 IT 제품의 판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적인 Portable CE 시장은 PMP, PND 등 기존 제품시장의 축소와는 별개로 WiFi, W-CDMA 등 Mobile 기능이 크게 강화된 태블릿 PC 등의 신제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성능(Lower-end)의 넷북(Net Book)과 고성능(Higher-end)의 스마트폰 시장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 태블릿 PC는 그 제품의 수요가 선진국 시장은 물론 중국, 남미 등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도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블릿 PC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제품인 애플의 i-PAD가 주로 북미, 유럽 등에서 확산된 반면에 중국 제조업체들이 제조하는 저가격의 태블릿 PC(China Pad)는 주로 중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브랜드 메이커들의 고성능 태블릿 PC 제품과는 별개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Tablet PC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ablet PC	0	20.8	55.6	76.5	93.6	108.4	119.2
성장률(%)	-	-	167.3%	37.6%	22.4%	15.6%	10.0%
China	0	7.2	12.6	16.3	18.9	21.1	22.5
점유율(%)	-	34.6%	22.7%	21.2%	20.2%	19.5%	18.8%

자료) TSR, October 2010

- 휴대폰(Smart Phone/Feature Phone)

휴대폰은 오늘날 개인화 멀티미디어 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의 지원으로 이종 기기들의 고유영역을 허물면서 카메라폰, 뮤직폰, 모바일 TV폰, 스마트 폰 등 표준화된 정의가 없는 다양한 컨셉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애플 i-Phone의 대유행과 그 대항마로서 등장한 휴대폰 메이커들의 최신 스마트폰 출시 경쟁이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최근 수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에도 기존 휴대폰(Feature Phone)의 대체 수요 발생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전세계 Smart Phone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Smart Phone	170.9	308.5	478.1	564.0	614.5	661.5	701.5
성장률(%)	-	80.5%	55.0%	18.0%	9.0%	7.6%	6.0%

자료) TSR, October 2010

□ 자동차용 Head Unit(Audio/Video/Infotainment 등)

자동차와 IT기술의 접목이 가속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또한 날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 Audio, Infotainment&Driver Information Head Unit 은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 및 외부 Interface 의 강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미국의 프리스케일을 비롯해 유럽의 인피니언과 ST마이크로, 일본의 르네사스, 유럽의 NXP필립스, 일본 NEC 등이 있습니다.

[ 차량용 Audio, Infotainment&Driver Information Head Unit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Head Unit	84.7	89.4	98.7	103.3	108.2	114.0	124.4
성장률(%)	-	5.6	10.4	4.7	4.7	5.4	9.1

자료) IMS Reseach, December 2010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각각의 디지털미디어 기기를 통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의 출현이 지속되면서 개별기기 시장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Portable CE(Tablet PC/PMP/PND), 휴대폰, 차량용 전장부품 등의 경우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의 채용에 따른 시장요구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의 적응이 경기변동상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경기의 영향과 함께 새로운 IT제품 및 기능을 추구하는 젊은층이 가장 큰 수요기반이 되고 있는바, 젊은 세대의 구매유인이 많이 발생하는 연말 및 연초에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제품의 수요 또한 3분

기와 4분기 중에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 (가) 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상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발 앞선 미세공정 적용과 시장수요 및 업체간 공급량 조정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됨으로써, 대규모 설비투자 능력을 보유한 업체간의 과점적 경쟁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주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적용되는 초기시장 형성단계에서는 독점적 또는 과점적 경쟁체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전방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경쟁시장체계를 띄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각종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기능이 점차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IT산업이 안고 있는 기술혁신과 가격 사이의 역설로 인하여 끊임없이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팹리스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공장과 대규모 연구개발투자능력, 그리고 훨씬 더 우수한 영업망을 갖춘 종합반도체회사(IDM)에 비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열세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핸디캡마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팹리스 기업이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의 선점이나 핵심 IP확보를 통해 특정분야에 기술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종합반도체회사에 비해 열세인 생산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파운드리(Foundry) 회사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나) 시장점유율 추이

당사 주요제품이 적용되는 주요한 응용시장별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Portable CE (Tablet PC/PMP/PND)

최근 스마트폰, 테블릿 PC, MID 등 기존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의 기능을 복합화한 컨버전스 제품들의 등장으로 PMP 및 PND 등 기존 멀티미디어 기기 시장의 제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관련시장을 망라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 휴대폰(Smart Phone/Feature Phone)

당사는 휴대폰 시장에 최근에 진출한 후발주자로서,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폰 제품에 당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동차용 Head Unit(Audio/Video/Infotainment 등)

현재 자동차용 Head Unit에 적용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2007년 4월부터 국내 완성차업체에서 양산하는 완성차 제품에 Audio Processor 제품을 공급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적용 모델을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 부터는 해외 완성차 업체까지 거래선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용 오디오 반도체 시장에서 당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2)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영업개황

### (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최근 디지털 멀티미디어 제품은 동영상 기능과 오디오 기능 그리고 카메라 기능은 물론 GPS 네비게이션, 모바일 TV 등의 기능을 응용한 융합 제품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방향은 소비자의 견해에 바탕을 둔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추세의 변화에 발 맞춘 제품개발/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 멀티미디어 제품이 PC급에 준하는 제품으로 변모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운용하는 Operating System 및 Application Processor의 성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OS 를 지원하는 고성능의 제품 출시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경쟁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영업개황

1999년 10월 설립된 이래, 당사는 2001년 세계 최초로 MP3 실시간 녹음과 재생이 가능한 제품의 출시, 2003년 USB Host 기능의 내장, WMA, OGG 등의 다양한 Codec과 다양한 외부 저장매체의 지원 기능, 2005년 세계 최초의 플래시 타입 MP3 플레이어에 대한 PlaysForSure 인증 등 시장의 제품 컨셉과 기술에 한 발 앞선 제품과 기술을 선보여 왔으며,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Chip 및 그에 필요한 Total Solution의 공급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도에 중국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모델('China Pad') 적용에 따른 매출증가와 자동차용 반도체의 견조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출(PMP, 휴대폰 등)의 부진에 따라서 전년 대비 2.4% 감소한 720억원의 매출액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AP(Application Processor) 개발 과정에서 미세공정으로의 적용에 따른 시제품제작비 증가와 VIDEO/ISP 등 신규 IP도입비용의 증가에 따른 개발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46.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손익 악화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적자 전환한 -33.4억원을 시현하였으나 적자규모는 이자수익 등 금융수익과 관계기업투자이익 등의 반영으로 영업손실 대비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당사는 2011년도에 AP(Application Processor)를 중국내 다수의 업체의 Tablet PC 모델에 양산 적용하여 중국향 매출액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신장시켰으며, 자동차용오디오 프로세서 공급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중국향 매출 및 자동차향 실적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공들여 온 Set Top Box 시장 진출을 통하여 부진하였던 2011년 대비 실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날로 중요해지는 S/W 개발 능력의 향상과 개발 프로세서의 안정화를 위하여 CMMI/SP2 등 S/W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운용 중에 있으며,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와 양성을 위하여 신규 및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11. 12. 31 현재

제 12 기 201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자산		
유동자산	65,318,827,368	70,104,812,133
현금및현금성자산	2,763,156,994	1,943,041,183
유동금융자산	42,987,064,630	48,837,987,184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7,825,576,831	7,483,935,537
당기법인세자산	263,946,235	314,465,605
재고자산	10,594,272,748	10,772,543,885
기타유동자산	884,809,930	752,838,739
비유동자산	43,889,392,639	47,328,706,753
비유동금융자산	2,295,127,860	1,854,350,891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7,344,522,593	7,188,241,307
유형자산	4,681,602,997	5,217,766,733
무형자산	9,789,537,937	13,967,385,533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9,672,665,628	8,730,888,292
이연법인세자산	9,349,732,987	9,425,446,951
기타비유동자산	756,202,637	944,627,046
자산총계	109,208,220,007	117,433,518,886
부채		
유동부채	10,689,730,952	11,504,664,74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9,308,246,127	10,164,153,148
유동충당부채	996,873,742	949,046,206
기타유동부채	384,611,083	391,465,394

비유동부채	9,789,218,235	7,541,446,346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1,130,989,961	516,163,522
비유동총당부채	308,091,739	266,677,054
퇴직급여채무	8,350,136,535	6,758,605,770
부채총계	20,478,949,187	19,046,111,094
자본		
납입자본	19,224,234,951	19,216,884,401
기타자본구성요소	(8,946,522,148)	(4,232,793,730)
이익잉여금(결손금)	78,451,558,017	83,403,317,121
자본총계	88,729,270,820	98,387,407,792
자본과부채총계	109,208,220,007	117,433,518,88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3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2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수익(매출액)	72,005,501,329	73,784,669,123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71,506,312,017	73,390,545,086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95,619,364	
기타수익(매출액)	403,569,948	394,124,037
매출원가	53,062,715,858	50,532,712,411
제품매출원가	52,839,743,906	50,328,444,385
용역매출원가	87,632,301	
기타매출원가	135,339,651	204,268,026
매출총이익	18,942,785,471	23,251,956,712
판매비와관리비	23,619,581,406	22,816,347,335
영업이익(손실)	(4,676,795,935)	435,609,377
기타이익	1,137,159,264	1,223,943,665
기타손실	3,091,414,756	2,200,275,093
금융수익	2,660,162,202	2,699,176,835
금융비용	84,777,513	1,926,186
관계기업투자이익	879,336,853	1,378,734,75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176,329,885)	3,535,263,353
법인세비용	166,896,457	(475,654,680)

계속영업이익(손실)	(3,343,226,342)	4,010,918,033
당기순이익(손실)	(3,343,226,342)	4,010,918,033
기타포괄손익	(719,368,995)	580,834,845
지분법자본변동	76,100,967	625,218,435
보험수리적손익	(781,809,478)	7,279,406
관계기업의보험수리적손익	(13,660,484)	(51,662,996)
총포괄손익	(4,062,595,337)	4,591,752,87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344)	382
희석주당이익(손실)	(343)	38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3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2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처분전 이익잉여금	77,570,195,564	82,603,260,948
전기이월이익잉여금	81,708,891,868	79,188,982,728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0	(552,256,223)
당 기 순 이 익	(3,343,226,342)	4,010,918,033
기 타 포 괄 손 익	(795,469,962)	(44,383,590)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합 계	77,570,195,564	82,603,260,948
이익잉여금 처분액	813,268,896	894,369,080
현금배당	739,335,360	813,062,8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배당율) :		
10%이상 대주주 : 80원(16%)		
소액주주 : 80원(16%)		
이 익 준 비 금	73,933,536	81,306,280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6,756,926,668	81,708,891,868

※ 제 13 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처리예정일 : 2012년 3월 30일

※ 제 12 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처리확정일 : 2011년 3월 28일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주, %)

구분	제 13 기	제 12 기	비고
당기순이익	(3,343,226,342)	4,106,900,837	-
배당금 총액	739,335,360	813,062,800	-
발행주식수	10,596,204	10,589,804	-
주당배당금	80	80	-
배당성향	-	19.80%	-
시가배당율	1.60%	1.05%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②회사는... 1. 발행주식총수의... 2. 상법 제542조의3에...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4. 발행주식총수의... 5. 발행주식총수의... 6. 발행주식총수의... 7. 발행주식총수의... 8. 발행주식총수의... ③제2항 각 호... ④ 신주인수권의...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동일) ② ..... ..... ..... 1. ~ 3. (현행과 동일) 4. <u>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 ..... (조항순연) 5. ~ 9. (현행과 동일) ③ ~ ④ (현행과 동일)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반영

<p>&lt;신설&gt;</p>	<p>제12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 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p> <p>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li> <li>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li>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반영</p>
<p>제14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p>	<p>제14조(주식의 소각)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p> <p>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p> <p>③ 회사는...</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p> <p>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회사는...</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u>서면으로</u>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p>	<p>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u>서면 또는 전자문서</u>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lt; 신 설 &gt;</p>	<p>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제40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u>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u></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p>	<p>제40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u>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u></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u>감사는...</u></p> <p>② 감사는...</p> <p>③ 감사는...</p> <p>④ <u>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48조(감사의 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동일)</p> <p>④ <u>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3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⑤ <u>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u></p> <p>⑥ <u>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⑦ <u>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u></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p> <p>② 대표이사(사장)는...</p> <p>③ 감사는...</p> <p>④ 대표이사(사장)는...</p> <p>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lt;삭 제&gt;</p> <p>② ~ ④ (현행과 동일)</p> <p>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② 이익의...</p> <p>③ 제1항의...</p>	<p>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동일)</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p>- 근거법령 개정반영</p>
<p>&lt; 신 설 &gt;</p>	<p>제1조(개정일) 본 정관은 2012년 0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37조의2, 제40조, 제48조, 제52조,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 개정상법 시행일(2012년 4월 15일) 반영</p>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민호	1963.09.30	×	본인	이사회
이장규	1963.03.05	×	본인	이사회
고성규	1968.09.02	사외이사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서민호	(주)텔레칩스 대표이사	- 서울대 제어계측학과 - 삼성전자(주) - (주)씨앤에스테크놀로지 디지털 통신연구실(실장) - 現, (주)텔레칩스 대표이사	-
이장규	(주)텔레칩스 부사장	- 연세대 전자공학과 석사 - 삼성전자(주) - (주)씨앤에스테크놀로지 DSP실(실장) - 現, (주)텔레칩스 부사장	-
고성규	스틱인베스트먼 트 상무이사	- 서울대 전기공학과 석사 - 대우전자(주) - IMM인베스트먼트 이사 - 現, 스틱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8억원	8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2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